

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기준(제45조제2호 관련)

1. 작동조건

- 가. 비상점멸표시등은 모든 방향지시등을 동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독립된 조작장치에 의해 작동될 것
- 나. 비상점멸표시등은 충돌사고가 발생하거나 긴급제동신호가 소멸되더라도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, 수동으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다. 길이 6미터 미만인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.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설치된 호박색 옆면표시등은 동일한 측면의 방향지시등과 동일하게 점멸하는 구조일 것

2. 표시장치

-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점멸식 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, 별표 6의17 제1호 마목의 표시장치와 연동되어 작동될 것

3. 추가적인 요구사항

- 가. 피견인자동차의 비상점멸표시등은 견인자동차의 비상점멸표시등과 동시에 작동되는 구조일 것
- 나. 비상점멸표시등은 원동기의 작동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도 작동하는 구조일 것